

예산총칙

2026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157,030,000 | 34,710,900 |
| 일반회계 | 1,052,894,000 | 31,586,820 |
| 특별회계 | 104,136,000 | 3,124,080 |
| 공기업특별회계 | 80,522,000 | 2,415,660 |
| 상수도사업 | 32,790,000 | 983,700 |
| 하수도사업 | 47,732,000 | 1,431,960 |
| 기타특별회계 | 23,614,000 | 708,420 |
|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| 8,040,000 | 241,200 |
|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자기금 | 1,002,000 | 30,060 |
|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| 714,000 | 21,420 |
| 주택사업 | 335,000 | 10,050 |
| 주차장설치사업 | 420,000 | 12,600 |
|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| 664,000 | 19,920 |
| 보령담주변지역지원사업 | 632,000 | 18,960 |
| 의료급여기금사업 | 2,462,000 | 73,860 |
| 공공급식지원센터 | 9,345,000 | 280,350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497,235천원 으로 한다.
(일반 3,597,235천원, 재해재난목적 1,650,000천원, 내부유보금 250,000천원)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3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.

- ① 인건비,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-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

제 6 조 예산의 자원 구분을 위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.

국: 국고보조금 / 균: 균특회계보조금 / 기: 기금보조금 / 특: 특별교부세 / 대: 지방소멸대응기금

도: 도비보조금 / 조: 특별조정교부금